

## 기업대출약정서(담보용) 신규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대출조건 &gt; 중도상환수수료</p> <p>[만기1년이상 대출]</p> <p>중도상환수수료는 「중도상환원금 x 1%(부대비용) + 중도상환원금 x (중도상환수수료율 % - 1%) x 잔존기간<sup>2)</sup> ÷ (대출기간 - 30일)」으로 합니다.</p>	<p>대출조건 &gt; 중도상환수수료</p> <p>[만기1년이상 대출]</p> <p>중도상환수수료는 「중도상환원금 x 1%(부대비용) + 중도상환원금 x (중도상환수수료율 % - 1%) x 잔존기간<sup>2)</sup> ÷ (대출기간 - 30일)」으로 합니다.</p> <p style="color: red;">다만,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% 미만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만기1년미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.</p>
<p>대출조건 &gt; 자금용도 외 유용시 제재조치</p> <p>여신 취급일로부터 ( )개월 이내에 「대출금 사용내역표」를 제출하지 않거나 당초 신청 용도 외 유용 사실이 확인되어 건전한 계속거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<b>회사의 서면 통지에 의해</b> 모든 여신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<b>상실하며</b> (해당여신을 즉시 상환)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. 또한, 용도 외 유용 <b>1차</b> 적발시 <u>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, 2차</u> 적발시 <u>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</u> (신규여신 취급이 제한)됩니다.</p> <p>(이하 생략)</p>	<p>대출조건 &gt; 자금용도 외 유용시 제재조치</p> <p>여신 취급일로부터 ( )개월 이내에 ‘대출금 사용내역표’를 제출하지 않거나 당초 신청 용도 외 유용 사실이 확인되어 건전한 계속거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회사의 <b>서면으로 변제의 독촉 등과 함께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회사에 대한</b> 모든 여신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<b>상실한다는 통지를 합니다. 해당 기간 경과시 채무자는</b> (해당여신을 즉시 상환)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. 또한, 용도 외 유용 <b>최초</b> 적발시 <b>자금용도 외 유용 적발일로부터</b> 1년까지, <b>추가</b> 적발시 <b>자금용도 외 유용 적발일로부터</b> 5년까지 (신규여신 취급이 제한)됩니다.</p> <p>(이하 생략)</p>